

신탁계약16 _ 장기채권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 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이 수행 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탁계약16 _ 장기채권형”이라 한다.
- ③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기구이다.
- ④ '제19조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동 제1조제②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투자신탁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합의로써 투자신탁의 계약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위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푸르덴셜생명 보험(주)을 말한다.
2. “투자일임(자문)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행(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3. “신탁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KB국민은행을 말한다.
4. “일반사우관리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25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신탁재산”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으로서 그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말한다.
6. “변액보험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계약의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7. “수익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특별계정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 받는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8. “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설정(추가 설정 포함) 또는 인출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영업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은 제외한다.
10.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손익의 귀속 등)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 재산에 계상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증권 등의 취득, 매각 또는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탁업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 ③ 신탁업자는 제11조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⑤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투자신탁 운용의 위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5조 제1항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자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중 투자자문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전체를 투자위탁으로 운용하는 방법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을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일임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 운용의 위탁을 받은 투자일임(자문)회사는 위임된 업무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7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투자신탁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는 특별계정의 투자신탁재산(추가 설정을 포함한다)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제10조에 의한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납입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투자신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해지 혹은 합의 해지로 종료된다.

②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계약해지 15일전 서면에 의한 통보로서 이루어지며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서면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까지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 매 12개월 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 년도 중 처음 도래하는 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납입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2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1.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발행된 증권
3. 집합투자기구: 법에 열거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속하는 수익증권
4. 유동성자산: 금융기관에의 예금(만기 1년 이내에 한함),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기업어음(A3 이상) 또는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1년 포함)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채권(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으로 투자한다.
2.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해지 또는 폐지일 이전 1개월간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 또는 인출이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자문)업자 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이전을 위해 투자증권을 현금화할 것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서 출금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좌로 송금시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계좌 : KEB하나은행 333-11-00115-4 / 푸르덴셜생명)

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공문으로 계좌번호를 변경한다.

제13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관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3. 동일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관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경우 2%)를 초과하여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 및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3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14조(투자신탁보수)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2. 투자신탁의 해지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계산기간동안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로 계산한 매일의 보수금액(연간 보수율을 당해연도 연간일수로 나누고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동안 누적한 금액으로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최대 연 10000분의 44.0
 - 2.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0분의 1.0
 -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0분의 2.3
- ④ ‘제19조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동 제14조 투자신탁보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투자신탁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합의로써 투자신탁의 계약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증권등의 매매수수료
 - 2. 차입금의 이자
 - 3.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4.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5. 증권 예약 및 결제비용
 - 6. 증권등의 가격정보 비용
 - 7.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보,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8. 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저작권료에 대한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16조 (투자신탁의 폐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신탁을 폐지할 수 있다.
 - 1.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폐지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폐지사유 및 기준일, 기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 등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고하는 방법

2. 수익자에게 서면을 통한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7조 (투자신탁의 해지 및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폐지 및 기타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해지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사전에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금 지급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현금화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어려운 경우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자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분배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재산 보관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한 후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 그 절차는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부·전부양도 및 정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당사자간 변경에 합의한 경우 새로운 신탁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에 그 절차는 관련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3. 이 신탁계약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5.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서면으로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23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년 02 월 26 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번지
푸르덴셜타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커티스 장

대표이사: 허 인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사해난)

[별지 1호]

적용대상 보험상품

1. 신탁계약16 _ 장기채권형 제1조제②항에 의거, 이 투자신탁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다.
 - 가. 무배당 푸르덴셜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
 - 나. 무배당 푸르덴셜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2018 년 02 월 26 일

집합투자업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번지
푸르덴셜타워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커티스 장

신탁업자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회사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 인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사해난)